

1. 개정이유

정부위원회 정비방안(‘22.9.7일, 행정안전부) 후속조치로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·징계위원회로 통합하고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는 공인회계사 자격·징계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 각각 이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공인회계사 시험위원회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으로 이관(안 제2조 및 제3조)

시험위원회 통폐합을 반영하여 응시원서 접수, 1차 시험 면제 관련 서류 제출, 응시표 교부 주체를 시험위원회 위원장에서 금융감독원장으로 변경하고자 함

나. 별지 서식에 정보기술과목 추가(별지 제19호 서식)

공인회계사 시험에 정보기술과목이 신설(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4호, 2022.4.19. 개정, 2025.1.1. 시행)됨에 따라 학점취득증명서(별지 제19호 서식)에 정보기술과목을 추가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특기할 사항 없음

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공인회계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(이하 “시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”을 “금융감독원장”으로, “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를 “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장”을 “금융감독원장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”을 “금융감독원장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위원장”을 “금융감독원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9호의 서식에 “4. 정보기술과목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제1항·제2항·제3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9호서식]<신설 2004.4.1., 개정 2006.3.10., 2025.O.O.>

학 점 취 득 증 명 서			
제	호		
성 명		학 번	
생년월일		전 공	
구 분	취 득 기 관	취 득 과 목	취 득 학 점
1. 회계학 및 세무 관련과목			
	취 득 학 점 합 계		
2. 경영학과목			
	취 득 학 점 합 계		
3. 경제학과목			
	취 득 학 점 합 계		
4. 정보기술과목			
	취 득 학 점 합 계		
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			
년 월 일 학교의 장(또는 학점인정기관의 장) [인]			
[취득기관란 기재요령] 1.법 제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이수한 자 : 학교의 명칭 2.법 제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: 「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의 명칭 3.법 제5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학점을 인정받은 자 : 「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명칭			

210mm×297mm(일반용지 60g/m²(재활용품)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)		제2조(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)		
① 「공인회계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응시자”라 한다)는 「공인회계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(이하 “시험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이 정하는 응시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①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융감독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		
1. 2. (생략)		1. 2. (현행과 같음)		
②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		②----- ----- ----- <u>금융감독원장</u> -----.		
1. 2. (생략)		1. 2. (현행과 같음)		
③응시자는 <u>시험위원회의</u>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공고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반		③----- <u>금융감독원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		

환하지 아니한다. ④ (생략) 제3조(응시표) <u>위원장</u>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.	-----. ④ (현행과 같음) 제3조(응시표) <u>금융감독원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	
연 락 처	(02) 2100 - 2695